

수신: 국회의장

제목: 『選舉管理委員會法』 개정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청원자(대표)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전송: 793-4745

성명: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 중 배 인

소개의원: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성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건명	「選舉管理委員會法」 개정청원
소개년월일	1997년 5월 29일
<p>소개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엄정한 선거관리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미약한 권한과 부족한 인원등으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말그대로 '관리'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선거에 대한 포괄적인 감시·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부정선거에 대해 실요성 있는 단속과 수사를 할 수 없음으로 인해 사실상의 감시·감독 권한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3. 참여연대의 청원안은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철저한 선거관리를 통한 공명선거 풍토의 정착이라는 방향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4. 본 의원은 이러한 의견이 선거문화를 개혁하고 올바른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에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소개합니다. 	

소개의원:


청원서

청원제목 : 「選舉管理委員會法」 개정청원

첨 부 : 청원안 1부

1997년 5월 29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대표전화: 796-8364, 팩스: 793-4745, 하이텔/천리안/나우콤: PSPD

『選舉管理委員會法』 개정청원

1. 개정 취지

엄정한 선거관리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미약한 권한과 부족한 인원등으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실무를 관리하는 역할 이상의 감시·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현행법에도 '불법선거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의뢰할 수 있는' 일정한 감시·감독의 권한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선거감시를 할 수 없는 것은 그간의 선거에서 이미 증명된 바이다. 이런점에서 참여연대의 개정안은 불법선거를 근절하고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준사법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감시·감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개정안의 주요골자

가. 선거감독관을 두도록 함
(제 14조의 3 신설)

나. 선거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토록함 (제 14조의 4 신설)

3. 개정안 전문

제14조의 2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 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할 때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의 3 [감독기관] 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감독관을 둔다.

② 선거감독관의 자격, 임면과 직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4조의 4 [감독관의 권한] 선거감독관은 선거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